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6나717 손해배상(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주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현 담당변호사 최동남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가단112424 판결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7.부터 2026. 8.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규정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저작권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제4항).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6, 7호증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이 약 12개이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비교적 장기인 점, 피고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매상들에게도 상당한 양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거래계좌를 분석하고, F 캐릭터의 최소 시장점유율 30%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 판매로 얻은 최소한의 수익을 247,014,544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점,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수량, 판매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불응한 점(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에 불응함), 피고가 침해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판매를 중단하고 잔존 물량을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거래한 소매업체의 수, 거래건수와 거래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양과 수입대금 등에 비추어 영세 소매상인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7,2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5.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 추가 인용금액인 2,8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5. 4.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부대항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저작권을 고의로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적어도 2023. 10. 이후부터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과다하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미술저작물인 이 사건 각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한 이미지가 포함된 이 사건 피고 판매 상품을 전시,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2025. 5. 29.경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부산지방법검찰청 2025형제8056호 사건)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정에 제3의 나.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과소하다. 피고의 부대항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